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년 11월 28일
행정재경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11월 15일, 정순기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3년 11월 15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3년 11월 28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순기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금천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및 문화예술 창작 인프라 확충을 통해 새로운 지역 문화를 창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청년 문화예술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안 제8조)
-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청년문화의 활성화 등)를 구체화한 것으로 자립 기반이 취약한 우리구 청년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문화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하고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청년 문화예술인’,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하고 청년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과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청년 문화예술 사업에 대하여
 -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명시된 해당 사업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사업 및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1조에서 청년 문화예술인의 권리 최우선 고려와 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우리구는 금년 1월말 기준으로 청년인구 비율이 32.92%로 서울시 평균 30.81%보다 높고 자치구에서 7위로 타 자치구와 비교하여 청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청년 예술인들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체계적인 청년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화된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